

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2021. 2.

금융위원회

## 1. 반환지원 대상 거래의 범위 확대(안 제3조의2)

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적용 대상인 ‘송금인의 착오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’에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통한 거래를 포함

현행	개정법(21.7.6일 시행)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<신설>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9. “착오송금”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,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(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)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.

### 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를 ‘자금이 이동된 거래’에 포함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간편송금이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이체와 유사하고 최근 이용규모도 증가

-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 
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금으로 지정하여 지원  
대상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## 2. 반환지원 대상 거래의 범위 확대(안 제3조의3)

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- ‘전자금융거래법’상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‘자금이체 금융회사등’으로 정하고,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적용

현행	개정법('21.7.6일 시행)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<신설>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10. “자금이체 금융회사등”이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#### <참고>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예보법 개정 주요 내용

-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'21.7.6일부터 시행될 예정
-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(사후정산 방식)
- 다만,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,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

### 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대상(자금이체 금융회사등) 지정 (§3조의2)
  -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\*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 대상으로 규정

\* 은행(외은지점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 포함), 금융 투자회사, 종합금융회사, 저축은행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농업협동 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협동조합, 우체국

- 전자금융회사의 경우 간편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업자는 일부(총 55개사 중 9개사)이고 변동 가능하므로, 예보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를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,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간편송금이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이체와 유사하고 최근 이용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, 동 선불전자지급업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### 3. 착오송금 반환지원계정의 차입방법 구체화(안 제15조)

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정 예금자보호법은 예보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, 차입금 등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하도록 함
    - 예보가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절차와 대상은 그 대로 그 기관에 적용

## 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, 이미 설치된 예금보험기금·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동일한 절차\*로 동일한 기관\*\*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함

\*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차입

\*\* 한은, 부보금융회사, 저축은행중앙회, 증권금융회사, 수출입은행, 자산관리공사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차입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#### 4. 예금보험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(안 제18조)

#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업권별 특성·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정비

#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예금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‘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’이 아닌 ‘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 등’을 고려하여 예보위에서 정하도록 함

#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# 라. 입법효과

- 예금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산정 기준을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

#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## 5. 매입계약 해제 요건 구체화(안 제24조의7)

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개정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보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함

현행	개정법('21.7.6일 시행)
<신 설>	제39조의2(매입대상 등)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. 다만,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,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.

### 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예보가 착오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매입계약을 해제 가능하도록 함
  - ❶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,
  - ❷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,
  - 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
-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것은 예보위원회에 위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허위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및 예금보험공사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예금보험공사가 사후적으로 매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## ① (예금자보호법 시행령 §3조의2)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(신설)

개정前	개정後
<신 설>	<p>제3조의2(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) 법</p> <p>제2조제9호에서 전자지급수단 중 “대통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.</p>

② (예금자보호법 시행령 §3조의3)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(자금이체 금융회사등) 지정(신설)

개정前	개정後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의3(자금이체 금융회사등) 법 제2조  <u>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</u>  <u>(이하 ‘자금이체 금융회사등’이라 한다)란</u> 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 <u>자를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</u></li> <li><u>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, 종합금융회사</u></li> <li><u>3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 은행</u></li> <li><u>4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 조합</u></li> <li><u>5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</u></li> <li><u>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 은행 및 조합</u></li> <li><u>7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</u></li> <li><u>8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</u></li> <li><u>9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 은행</u></li> <li><u>10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 기업은행</u></li> <li><u>11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</u></li> <li><u>1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중 제3조의2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자로 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 는 사업자</u></li> </ol>

③ (예금자보호법 시행령 §15① · ③) 지원계정의 차입방법 구체화

개정前	개정後
제15조(차입의 방법 등) ①공사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 <u>계정의</u>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	제15조(차입의 방법 등) ①----- ----- <u>계정</u> <u>또는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<u>예금</u> <u>보험기금</u> 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 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한국자산 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관리·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 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<u>예금</u> <u>보험기금</u> ,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<u>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</u> 또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<u>착오송금반환</u> <u>지원계정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
#### ④ (예금자보호법 시행령 §18)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

개정 前	개정 後
<p>제18조(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<u>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.</u> 다만,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(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⑥ (생 략)</p>	<p>제18조(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<u>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.</u> 다만,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(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⑥ (생 략)</p>

⑤ (예금자보호법 시행령 §24조의7) 매입계약 해제 요건 구체화(신설)

개정 前	개정 後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4조의7(매입계약의 해제) ① 법 제39조의2  <u>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</p> <p>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  <u>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</u></p> <p>2. 차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 <u>확인되는 경우</u></p> <p>3. 신청일 이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 <u>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     경우</u></p> <p>4. 그 밖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 <u>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입계약을  <u>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    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</u></p>